

이 자료는 4월 19일(목) 11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정례브리핑 모두 말씀

2007. 4. 19(목)

1.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현황 / 1
2.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결과 / 4
3. 4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 주요 법률안 / 8
4. 한미 FTA 영향분석 추진현황 / 15

재정경제부
홍보관리팀

1

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현황

먼저, 최근 진전된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

[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]

- (의의) 그간 처리가 지연되던 주택법,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4.2일(월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바
 - 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
 - (주요 내용) 금번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
 -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, 분양가 심사위원회, 마이너스 옵션제,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사업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(주택법)
 -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(택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절차 통합) 및 「공공·민간 공동사업*」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(택촉법)
- * 민간사업자가 사업지구의 50% 이상의 택지를 매입하였으나, 알박기 등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 잔여토지에 수용권을 발동하여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

- (향후 일정) 9월 중 분양가 상한제, 원가공개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

[임대주택법 관련]

- 「1.31 대책」에서 발표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그간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으나,
 - 지난 4.17(화) 국회 건교위에 상정되어 현재 소위에서 논의중에 있음
- 그간 정부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법무법인·증권사 등 시장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「임대주택펀드」의 구체적 운용구조를 확정하여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음
 - 임대주택법이 개정될 경우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및 임대주택 펀드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고
 - 펀드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보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- (향후 일정)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중 처리되는 대로
 - 건교부내 펀드설립과 관련한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9월 중에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토록 할 계획이며
 - 10월 이후에는 금년 중 추진키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5천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임
 - 참고로,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재정출연금은 2011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*되어 있어 재원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
 - * '07 (200억원), '08 (1,000억원), '09 (1,000억원), '10 (1,500억원), '11 (2,000억원) 등 향후 5년간 총 5,700억원 반영
- 4월 중 임대주택법이 처리될 경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, 서민주거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모두 제도화되어
 -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
- 특히, 건교위에서 논의 중인 임대주택법의 경우
 - 주택의 가용성 제고를 통해 서민·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
 - 앞으로 언론과 국민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

다음으로 지난주 금요일(4.13일) 개최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

[회의 개최 개요]

- 이번 회의는 경제자유구역사업 관련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
- 금번 위원회에서는 인천 송도지구 교육·연구기관 유치원칙과 장기임대산업단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고
-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예외없이 적용하되, 분양가격 산정기준 마련과정에서 초고층 설계 등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였음

[인천 송도지구 교육·연구기관 유치 원칙 마련]

- 인천 송도지구 교육·연구기관 유치 원칙에 대해 설명 드리면
- 동 원칙은 인천 송도지구내 국제 학술·연구단지에 대한 국내·외 교육·연구기관의 유치기준을 정한 것으로서,

- 유치대상은 IT·BT 등 분야의 대학원 및 연구소를 주로 유치하되, 국내·외 기관을 균형있게 유치하고,
- 부지배정은 외국기관에 우선 배정하면서 국내 기관은 외국기관과의 공동 협력프로그램 등 연계를 우선 고려키로 하였음
- 다만, 미래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계획 단계에서 미리 유보지를 확보하고, 기관별로 향후 발전가능성도 감안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부지를 배정·공급하기로 하였음
- 끝으로, 주거·상업용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, 그 개발이익은 IT·BT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국내·외 교육·연구기관 유치 등에 활용토록 하였음

[장기임대산업단지 도입 방안 마련]

- 다음으로, 경제자유구역 내에 도입하기로 한 장기임대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산업단지를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서
-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소시켜 외자 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-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시 연간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% 수준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으로 함
- 금년 상반기 중 3개 구역청별로 최소 2만평 규모를 시범 지정할 계획이며
 - 시범사업의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지정을 통하여 향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임

[분양가상한제 영향 및 대책 마련]

- 다음으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하였음
 - 다만 분양가격 산정기준 마련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조성해야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수한 여건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도록 하였음

[향후 계획 및 전망]

-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성장동력 사업으로

- 그간 제도구축, 기반조성을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부터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등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음

-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마련된 국제적인 교육·연구단지 유치원칙, 외국인전용 장기임대산업단지 도입 등도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-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외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

- 이를 위해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,

- 특히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가일층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

다음으로, 4월 임시국회 처리대상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통합법) 제정]

- 정부는 증권거래법, 선물거래법,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관련 7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규율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
 - ①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, ②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, ③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, ④업무범위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
- 현재 증권업의 소액결제서비스 허용과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 허용 문제로 인한 논란으로 동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
 - 그러나 결제안정성 저해우려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 중인 서민금융기관 방식을 활용하게 되고 충분한 안전성 담보장치*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,
 - * 예탁금 100% 별도예치 제도, 결제한도의 100% 담보제공 의무 등

- 그동안 겸영을 금지한 것이 이해상충 방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겸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,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와 같이 겸영을 허용하도록 한 것임

-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이 늦어질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, 동북아 금융허브 선점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*가 있으므로
 - 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

* 일본은 2006년, 홍콩과 싱가폴은 2002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

[사회보험통합징수법]

-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은 ①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신설하고, ②4대 사회보험료 부과·징수업무를 '09.1월부터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
-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 정책 토론회(2.13.)와 공청회(2.27.)를 개최하였으며
 - 사회보험 통합방안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하는 방안, 완전통합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음

□ 현재 소위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나

○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소위배정이 이루어지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

□ '09.1. 출범 예정인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

-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음

[국민연금법 개정]

□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4월 17일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였음

구분	열린우리당·민주당안	한나라당·민노당안
국민연금	보험료를 9%, 급여율 45% 연금고갈시기 2056년	보험료를 9%, 급여율 45% 연금고갈시기 2060년
기초노령연금	기초노령연금법 유지 (지원대상 : 60%, 급여율 5%)	국민연금법에 통합 (지원대상 : 80%, 급여율 10%)

□ 이는 여·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됨

○ 참고로, 여·야는 금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음(4.11일)

□ 다만, 두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효과가 당초 정부·여당안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됨

○ 당초 정부·여당안은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5년으로 20년 연기하는 효과가 있었으나,

○ 열린우리당안은 고갈시기가 2056년, 한나라당안은 2060년으로 재정안정화효과가 다소 약화되었음

○ 또한, 한나라당안이 재발의한 기초연금은 2030년 73.4조원, 2050년 251.2조원 등 막대한 정부 재원 부담이 우려됨

□ 기초노령연금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

○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만 시행되게 되면,

- 다음 세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와 기초노령연금 재원부담이라는 두가지 큰 재정부담을 함께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

* 기초노령연금 소요재원

: ('08) 2.4조원 → ('10) 3.5조원 → ('30) 19.1조원 → ('50) 67.1조원

○ 정부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

[국가회계법]

-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06.12.27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07.3.30 재경위에 상정하였음
- 국가회계법은 국가회계에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,
 -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재정상태(재정상태표)와 재정운용의 내용(재정운영표) 정보를 통해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- 현재 재경위 계류 중인 국가회계법이 조속히 처리되어 재정혁신을 뒷받침하기를 희망하며,
 - 정부도 법 통과 이후 '실무위원회' 및 '전문용역기관'을 구성·운영하여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

<참고> 재경부 제출, 4월 임시국회 계류 법안 (총16개)

법안명	주요내용	현황
1.증권거래법 2.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3.선물거래법 4.상호저축은행법 5.여신전문금융업법 6.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7.보험업법(개정) *산업자본 금융 지배방지로드맵 관련 7개법률안	○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의결, 사후 공시 등 의무화 ○사의이사수 확대 (1/2 이상→과반수) ○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시 이사회의결, 사후공시 등 의무화	재경위 금융소위 계류
8.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(제정)	○금융허브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금융허브추진 위원회의 설치 ○금융허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의 원칙 규정 ○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등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의 지원	재경위 금융소위 계류
9. 사회보험료의 부과등에 관한 법률(제정)	○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여 4대보험의 적용·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일괄처리	재경위 상정
10. 금융지주회사법 (개정)	○소규모 지주회사는 금감위 인가대상에서 제외 ○외국 금융지주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(PEF)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 ○부득이한 사유로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아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범위만 상태를 해소할 기회 부여	재경위 금융소위 계류

법안명	주요내용	현황
11. 관세사법 (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 ○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 제도 도입 ○ 관세사 보수교육 폐지 	재경위 조세소위 계류
12.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 근거 마련 ○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병원 설립주체 범위 확대 -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허용 	재경위 금융소위 계류
1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증권거래법, 선물거래법, 자산운용법 등 7개 자본시장관련 금융법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규율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투자회사가 취급업무에 대한 사전적 제한을 폐지 - 금융투자업의 영위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여 선진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 	재경위 금융소위 계류
14.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에 관한 법률(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테러·테러자금 개념 정의 ○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○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사후규제 	재경위 금융소위 계류
15.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테러자금조달억제법’ 제정과 관련된 사항의 반영 ○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○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범위 확대 	재경위 금융소위 계류
16. 국가회계법 (제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회계에 복식부기·발생주의 방식 도입 ○ 국가의 재정운용현황에 대한 국가재무보고서 작성 ○ 국가회계기준 제정 운용 	재경위 금융소위 계류

4. 한미 FTA 영향분석 추진 현황

다음으로,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작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

① 지난 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, KIEP, 산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들이 개별 협상내용을 토대로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

② 정부는 이러한 분석과정상 투명성·객관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- 부문별 영향분석은 해당분야에서 가장 권위있고 전문성있는 연구기관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

- 분석결과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검토 절차도 두가지 방향(Two-track)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

① 각 연구기관에서 FTA 체결지원위의 협조 하에 산업별·업종별 영향 분석결과를 민간위원회에 검토토록 할 예정이며,

② 학계의 전문가들에게는 전체적인 분석의 틀, 방법론 및 결과 등에 대한 별도의 자문을 거칠 계획임

③ 상기 분석작업은 4월말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, 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임

○ 아직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,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 등으로 어느 정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

○ 그러나,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성장 확대로 소득세·법인세 증가 등 간접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

- 교역이 증진되고 투자가 확대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,

특히, 경쟁 촉진,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

④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영향분석 결과들을 활용하여 부문별 국내 보완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